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025. 3. 24.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97호로 2025년 3월 10일 임헌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 중 보건소 진료비 신설(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03.11.~2025.03.1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병역명문가 지원사항 중 보건소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6조(지원)는 이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검토결과

- 본 조례는 대대로 국방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¹⁾에 대하여 예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2018.11.08.)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 있음.
- 한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서울시 타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24개 자치구 중 18개(75%)의 자치구에서 병역명문가의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음.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서울시 타 자치구 보건소 진료비 감면 여부

구 분	자 치 구
감면 (18개)	-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비(非) 감면 (6개)	- 성북, 양천, 강서, 구로, 강동, 은평

- 영등포구에는 약 191가문(950명)의 병역명문가가 거주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는 사용료 등 감면사항 외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타 서울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용료 등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병역명문가들이 지원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